

CPR

사상.양심.표현의 자유

양심수

양심수 군문제 관련 자료; 양심수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양군모)

POC.f.5



30

인권 자료실		
구분		로번호
	BIP	16

양심수의  
군문제 모임

# 탄 원 서

수신: 김영삼 대통령 당선자  
탄원인:

1. 지난 14대 대통령 선거의 결과 30년간의 군사통치가 막을 내리고 최초의 민간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난날 군사 통치의 유물을 청산하고 문민정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열망은 그 어느 때 보다 높습니다.
2. 새로운 문민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출발은 군사통치에 의해 강요되었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대화합을 이룩하는 것이며 특히 군사통치하에서 고통당하고 피해를 보았던 각계 각층의 인사들을 구제하는 것이야말로 문민정부가 선처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중의 하나입니다.
3. 평생을 조국의 발전과 민족통일을 위해 노력해온 한사람으로서 적지 않은 수의 젊은이들이 구속, 수배, 제적 등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4. 특히 현재 구속중인 학생이나 이미 출소한 학생의 경우 군대 징집문제로 이들이 학업을 수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한창 진리 탐구와 인격도야에 힘쓸 나이에 4~6년간 수형생활과 군대생활로 사회로부터 격리된다면 개인적으로는 크나큰 고통과 피해의식에 의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서의 발전이 가로막힐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커다란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5. 역사적으로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포괄적인 국민대화합 조치의 일환으로 시국관련 학생에 대한 관용조치가 있어 왔으며, 문민정치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는 지금, 구속학생을 비롯한 시국관련 학생에 대해 포용력있는 조치는 국민들의 문민정부에 대한 신뢰를 더욱 굳게 할 것이며 이후 사회안정에도 큰 기여를 하리라 확신합니다.
6. 법적용의 차원을 떠나서, 인도적 견지와 대화합의 견지에서 이들이 정상적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포용력 있는 선처가 있기를 바랍니다.

## 양심수의 군문제 해결을 위하여

### 목차

1. 우리는 왜 군문제를 제기하는가?
2. 현행 징집제도의 문제점
3. 양심수 군문제 해결 노력의 성격과 정당성
4. 우리의 요구
5. 별첨자료

— 양심수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 —

(TEL. 766-8828, FAX. 766-4979)



## I. 우리는 왜 군문제를 제기하는가?

1) 지난 14대 대통령선거의 결과 30여년간의 군사통치가 막을 내리고 새 민간정부가 들어서게 되었다. 이제 군사통치의 잔재를 청산하고 문민정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새로운 문민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출발은 과거 군사통치에 의해 강요되었던 제반 불신과 억압을 해소하고 국민대화합과 민주개혁을 이룩하는 것이며 특히 군사통치하에서 피해를 보았던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구제하는 것이야말로 새 정부가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중의 하나이다.

2) 조국의 민주주의와 통일을 앞당기려는 소박한 열정으로 5,6공화국의 권위주의적인 통치에 저항하다가 구속된 청년학생은 6공 들어서만도 3천여명이 넘는다. 지금도 감옥에서 갇혀 있는 800여명의 양심수 중에서 절반 이상이 학생들이다. 새로운 정부의 출범에 즈음하여 양심수들의 대규모 사면, 복권이 있을 것이라는 소식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수없으며 사면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3) 그런데 시국관련사건으로 구속되었던 학생들은 현 군대징집제도에 의해 또다른 고통을 강요당하고 있다. 현 군대징집제도(1989년3월 개정)에 의하면 시국관련사건으로 구속되었던 학생은 2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았을 때는 군대에 입영토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구속 중인 학생의 1/3은 출소 후 바로 군대에 가야만 한다. 결국 이들은 4~6년간 사회로부터 격리될 처지에 처해 있다.

4) 이들의 고통은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들이 구속되었던 것도 결코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사회정의와 민족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열정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사정치의 청산과 문민정치를 표방하는 새 민간정부는 이들에게 정상적 학업수행과 사회진출의 기회를 기회를 마련하여 주는 것이 시급히 요청된다.

## II. 현행징집제도의 문제점

### 1. 현행 시행령의 모순점

1) 무원칙, 무분별한 시행령 개정으로 법적용의 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병역의 의무와 연결되어 있는 병역법 시행령이 정치적 상황과 정권의 담당자가 바뀔때마다 무원칙, 무분별하게 변경되어 왔다. 특히 학생 징집대상자 및 양심수 관계조항에 대한 변경은 자신들의 편에 입각하여 변경하여 왔으므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별첨자료1,2 참조)

2) 병무청에서 제시한 시행령개정의 근거는 근거없는 말이다. 병역법 시행령 104조에 의하면 현역 복무중인 자가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으면 전역조치토록 되어 있어 형평을 유지하고자 입영대상자 또한 실형 2년 이상이 병역면제 처분의 기준이 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시유를 밝히고 있으나, 조사된 바에 따르면 현역 사병이 2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고도 전역되는 경우가 명백히 존재한다. (별첨자료3 참조)

3) 집행령은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

실형 2년 (단일사건) 이상 선고받은 자에 대해 병역면제 처분을 내린다고 하였을 때 현행법 하에서는 실형 1년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자가 집행유예 기간중에 재구속되어 실형 1년 6월을 선고받아 도합 3년의 형을 살고 나온다 하더라도 입영대상이 된다.

4) 시행령이 계속 개악되고 있다.

91년 시행령이 개정되어 (대학재학생 신검 자동연기 폐지) 19세에 의무적으로 신체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시행령에 따르면 양심수는 출소와 동시에 입영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그렇게 되면 양심수는 사회에 적응할 틈도 없이 4~6년간 사회와 격리될 수 밖에 없다.

## 2. 법적용의 불공정성

1) 일반사범과 양심수 사이에 차별성이 존재한다.

실형 2년 미만 선고자 중 일반사범의 경우에는 그 죄질에 따라 군 사고 우려등의 이유로 인해 입영순위가 후위로 조정되어 결국 면제가 될 수 있지만 (일반사범중에 이런 사례가 많다) 양심수는 예외없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 빨리 영장이 나오고 있다. (별첨자료4) 한국에는 양심수가 한명도 없다고 말하며 양심수를 폭력범으로 매도하다가 유독 군문제에 있어서는 일반사범과 차별짓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바로 과거와 마찬가지로 국방의 의무가 민주화운동 탄압의 일환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2) 양심수에 대한 특별관리가 병무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91년 병무청 면담과정에서 서울지방 병무청 당국자는 양심수를 특별관리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종산금속 안강공장의 노조원 권영국씨의 구속을 이야기하며 실형을 살고 나와 다시 민주화운동에 열심인 경우 안팎의 압력으로 우선입영이 될 수 밖에 없음을 인정하였다. (참고로 권영국씨는 실형 1년 6월을 살고 나온 특례보충역 해고노동자이다.)

## 3. 군 입대시 양심수에 대한 탄압

양심수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90년 윤석양 양심선언과 92년 최홍기 이병의 양심선언에서 알 수 있듯이 운동권, 특히 양심수들은 자대배치 직전 보안사에서 조사를 받게되며 윤석양 이병처럼 프락치강요를 받는 특별관리 사병으로 분류되어 정치보복적 탄압의 대상이 되고있다. (별첨자료5) 또한 1



년에 1000명 가까운 사병들이 사고사(?)로 죽어가고 있는데 고 남헌진(한국외국어대 88학번)과 고 송종호(서울대 87)등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운동권출신 사병의 죽음은 그친상이 규명되지 않아 의혹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속에서 양심수들에게 군 입영은 병역의부의 수행이라기보다는 체계화된 정치보복적 탄압구조로의 편입으로 다가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 Ⅲ. 양심수 군문제 해결 노력의 성격과 정당성

1. 새로운 문민정부는 과거의 정치적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이 땅에 양심수가 발생하고, 양심수의 군문제가 발생한 것은 권위주의 정권의 억압적 통치방식에 기인한다. 14대 대통령 선거의 평가에서 누구나 일치하는 것처럼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자는 국민들의 요구는 40년만에 문민정부를 세우는 것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때문에 7공화국은 다른 어떤 일보다도 과거 권위주의가 나았던 문제들을 깨끗이 청산하는 임무를 띠고 있으며, 이 일을 충실히 함으로써만 신한국의 올바른 출발을 인정받을 수 있다. 양심수의 전면 석방과 이들의 군문제 해결, 제적생의 복교, 수배 해제 등은 그 임무의 하나가 된다.

2. 우리는 7공화국이 5,6공화국보다 진일보한 면모를 보이기를 기대한다.

5,6공화국 역시 처음에는 국민대화합을 주장하며 양심수의 석방과 군문제 해결, 수배해제, 제적생 복교조치를 큰 폭으로 실행한 바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5,6공화국은 석방된 양심수보다 더 많은 양심수를, 군문제 해결자보다 더 많은 군내 의문사를 낳고 말았다. 우리는 7공화국이 양심수 석방과 군문제 해결을 전폭적으로 실행함은 물론 집권기간 동안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애써줄 것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3. 양심수의 군문제는 젊은이들의 장래가 걸린 문제이다.

젊은 시절 4-6년의 시간을 허비한다는 것은 개인으로 봐도 회복할 수 없는 상처이다. 하물며 양심적이며 진취적인 수백명의 청년들이 선의의 행동에 의해 20대를 다 보내고 학업도, 취업도 포기해야 한다면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을 구제하는 것은 인문의건지에서보나, 국가의 장래를 놓고 보나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다.

4. 양심수의 군문제는 법에 의해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권위주의 정권의 학생탄압정책의 일환으로 빚어진 문제이다.

정치환경에 따른 잦은 법개정, 일반 수형자와의 차별, 출소 직후의 영장발부, 군내에서의 가혹행위 등은 양심수를 사회에서 격리시키고자 하는 의도로밖에 해석될 수 없다. 이는 이제 신한국의 노래와 함께 사라져야 할 구시대 유물의 하나임에 분명하다.

## N. 우리의 요구

— 구속학생들이 정상적인 학업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군장집을 면제시켜 주어야 한다.

- 1) 이를 위해 우리는 대통령의 특례조치를 요구한다.
- 2) 세부적 사항은 89년 3월 25일 이전의 병역법 시행령과 병무청 시행세칙을 참고할 수 있다.



## < 시국사범에 대한 병역법 개정 역사 >

역대 정권의 시국사범에 대한 징집 정책은 운동의 발전에 따른 국내 민주화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이차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기 구분을 통하여 역대 정권의 징집제도 약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 시기 구분 : A. 유신 I기

<----- 긴급조치.

B. 유신 II기

C. 5공 I기

<----- 유험곡면, 학생운동 성장.

D. 5공 II기

E. 6공 I기

<----- 공안 통치 시작.

F. 6공 II기

A. 유신 I기(1975년 7월10일 이전)

\* 병무청 시행 세칙; 현역입영 면제 대상 부분에서,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자'에 대해서는 죄질을 불문하고 현역 입영 부적격자로 판정,보충역에 편입시켜 소집 면제.

B. 유신 II기(1975.7.10. 시행 세칙 개정)

\* 병무청 시행 세칙; '대학생 현역 입영 대상자 중 여타의 걸적 사유가 없는 한 입영 시킨다.'

\* 개정 취지; 75년 5월 이후 긴급 조치 위반으로 구속 기소 되어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학생들에 대하여 입영 시키려는 의도로 개정.

\* 79년 말 1년 간 싸워 해결(시행 세칙이 75.7.10. 이전으로 개정)



\* 83년말 유회조치로 5.17이후 구속자 석방.석방자에 대한 입영조치 기도에 대하여 84년초 싸움, 5.17 이후 84년 초까지 대상자 보충역 편입.

D. 5공 II기(84.5.25. 병무청 시행령과 시행 세칙 개정)

\*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병역의무자로서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 받은 자는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에서 제외된다.

제57조(특수 전역 및 병역 면제)

① 수형 고령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보충역 편입, 방위 소집 면제 또는 방위 소집 해제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예비역의 병중 수형자에 대해서는 보충역에 편입할 수 있다.

\* 시행령; 제103조(수형자 등의 보충역 편입)

①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 받은 자는 보충역 편입 또는 방위 소집 해제할 수 있다.

② ①이외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죄질, 형량, 자질 등을 감안하여 현역병 또는 방위병으로 입영하거나 보충역 편입 또는 방위 소집 면제의 처분을 할 수 있다.(신설)

\* 병무청의 수형자 처리 기준.(자세한 것은 표1.참조);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형으로, 집시법을 제외한 10개 특별법(국가보안법 포함)위반자는 방위 소집 면제 즉, 보충역 편입.

E. 6공 I기(88.8.1.-89.3.25. 시행령과 시행 세칙 개정)

\* 병역법 제3조, 제57조 개정.

\* 병역법 시행령 제103조(수형자 등의 보충역 편입)

① 징병 검사, 현역병 입영 또는 방위소집 대상자로서 병역법 제57조 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방위 소집을 면제 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 받은자.

F. 6공 II기(89.3.25. 병역법 시행령 개정)

\* 병역법 시행령 제103조

① 징병검사, 현역병 입영 또는 방위 소집 대상자로서 병역법 제57조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방위소집을 면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2년이상의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 받은자. 다만,그형의 집행이 유예된 자는 제외된다.(89.3.25.단서 신설)

죄질에 따라 처분		형량에 따라 처분	
구분	처분 기준	구분	처분기준
헌역 입영 대상	* 형법상 과실범-실화, 과실 치사상 등. * 집시법, 도로교통법 등 특별법 위반자.	헌역 입영 대상	* 6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 받은자 * 1년 집행 유예자.
징집	* 형법상 과실범 이외의 수형자. * 10개 특별법 위반 수형자.(국가보안법, 폭력 행위등 범죄 처벌법)	방위 소집 대상	* 6월 이상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형을 선고 받은 자. * 1년 초과 2년 미만의 집행유예자.
및 소집 면제 대상	* 소년원 재원 전력자. * 기소유예, 선고유예및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은 다음 범죄자. * 살인, 강도, 방화, 강간, 존속 폭행, 존속 상해, 상해 치사, 폭행 치사, 악취와 유인 및 체포와 감금은 1회 이상. * 상해, 폭행치상, 폭력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 공갈, 야간 주거침입 절도 및 특수 절도는 2회 이상.	징집 및 소집 면제 대상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자. * 1년 이상 형 선고자로 2년 이상 집행유예자. * 소년원 재원 전력자.
			* 시행일: 88.8.1 부터. * 경과 조치 -88.8.1 이후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본지침 적용. -88.7.31이전 수형자는 종전 지침에 의거 처분하고, 종전 의 지침에 따라 입영하게 되 는 자에 대하여는 본지침을 적용 처분.

< 표1. 수형자 병역 처분 기준 >



## 과거 강제 징집, 부당 징집에 대응한 사례와 결과

### 1. 유신만가의 강제 징집, 부당 징집-취폐-투쟁 사례(79년의 경험)

- 1) 배경: 박정희 정권 하에서 1975년 7월 10일 이전에는 시행 세칙중 현역 입영 면제 대상 부분에서,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자'에 대해서는 죄질을 불문하고 현역 입영 부적격자로 판정, 보충역으로 편입시켜 소집 면제 조치토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75년 5월 이후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 받은 학생들에 대하여 현역 입영 시키려는 의도로 동년 7월 10일 이전의 시행 세칙을 변경하여 대학생 현역 입영 대상자중 여타의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입영시킨다는 원칙을 세우고 당시 석방되었거나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대상 대학생들을 입영 조치 하려 하였다.
- 2) 결과: 그러나 79년 실형을 복역하고 나온 긴급 조치 위반 학생들을 중심으로 '병역 문제 대책위'를 구성하여 1년여간 투쟁하였다. (자료부족으로 상세한 설명불가)
- 3) 결과: 시행 세칙을 개정이전의 원칙대로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자'에 대하여 징집 면제 한다는 데에 입각하여 보충역에 편입되었다.

### 2. 84년의 강제 징집-기부-투쟁 사례

- 1) 배경: 광주를 피로 물들이고 권좌에 오른 전두환 정권은 거세찬 민중의 투쟁에 밀려 대응책으로 1983년 12월 20일 유화조치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80년 이후 제적당한 대학생들의 대규모 복교 조치가 취해졌다. 그러나 한편으로 반 정부 투쟁의 최선두에 섰던 복학생들의 대거 학내 유입의 영향을 두려워한 정권은 복교 조치 이후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내규를 고쳐서, (집시법 위반자의 경우에만 실형 3년 이하는 모두 징집) 1800여 대학생들을 강제 입영 시키고자 기도 하였다.
- 2) 결과: 이에 복교생들은 「복학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강제 징집 반대 투쟁을 전개하였다.
- 3) 결국 「복학 대책위원회」의 투쟁을 계기로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하지 못하고 이들을 전원 보충역으로 편입시킨 후 병역(소집)면제조치를 한후, 84년 5월 25일 다시 이 시행 세칙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시행 세칙에 따르면 징집 면제 대상자에 대한 조항중 국가 보안법, 밀수, 마약, 매춘, 폭력 등의 조항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자에 대하여 현역 입영 면제 조치하고, 그외의 특별법(집시법 포함)조항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을 때에만 현역 입영 대상에서 면제 되는 것으로 개악하였다.



### 3. 신서민 위반, 서국 관련사에 대한 부당징집-구속두셈 사례(87-88년)

1) 배경: 84년 5월 이후 집시법의 경우 종전과는 달리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자도 군에 징집되는 조항이 신설된 후 실제 실형 3년 이상을 선받은 자는 1명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당시에 국가 보안법 위반자는 거의 없었으므로 대규모 강제 징집 대상자가 생겨났다.

#### 2) 경위

① 87년 6월 항쟁의 정치적 성과로서 7월 8일 구속자들이 대거 석방되었고 이들이 중심이 되어 7월 17일 「구속학생 청년 협의회」에서 대상자들이 첫 모임을 가졌다. 그후 8월초 「부당징집 대책 특별 위원회」를 공식적으로 발족 시켜 서울 4지역, 인천 지역 대표들로 집행부가 구성되어 활동하였다.

② 87년 8월초, '전원 석방 서명운동'에 참여하여 유인물(성명서)을 배포하였다. 당시 민정당-민주당 인권회담 의제중의 하나로 '부당징집' 문제가 제기되고 대상자 대표(특위 집행부)와 어머님들이 민주당 인권 위원회(당시 목 요상 의원)을 만나 부당 징집 폐지를 요구하였고 8월 중순경 대상자와 어머님들 60여명이 병무청에서 연좌 농성하여 병무청장과의 공식 면담을 하여 '첫째,복학하면 29세까지 재학중 입영 연기, 둘째,미복학자도 1년간 입영 연기'라는 미봉책을 공문으로 작성 전달 받았다.

③ 특위의 활동으로 서울, 인천 지역 대상자중 120여명의 명단을 파악 하였고, 당시에 300여명으로 추산하였다. 그 당시의 정보를 토대로 하여 성명서와 자료집을 배포하였다.

④ 87년 9월에는 「징집 특위」를 해체하였다.

그후, 대선을 거치고 대선의 패배에 영향을 받아 특위의 활동이 없다가 4.26 총선의 결과에 고무되어 정치적 해결의 모색이 다시 일어났다.

① 88년 5월 11일 카톨릭 회관에서 민가협 구속자 가족들이 '전원 석방,수배 해제, 사면 복권'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부당 징집 중단'요구가 추가 되었다.

② 「양심수 특위」소식지, 성명서에 '부당징집 중단'요구가 포함되고 민가협,서출동명이의 '부당 징집 중단'성명서가 작성되었다.

③ 당시 부당징집만을 담당하는 공식적이고 대외적인 주체는 구성되지 않았고 내부적으로 당사자들이 연락 체계를 꾸리면서 논의를 진행하였다.

④ 평민당 측에는 개인적으로 내용 전달하고, 공개 집회에서 부당징집 문제를 가지고 발언했으며 결의문에 채택되었다. ( 이후 개정 까지의 과정에 대해서는 자료 부족으로 설명 불가.)



3) **결과:** 88년 8월 1일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국 관련 징집 대상자 483명중 447명이 현역 입영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구체적으로는 **형량에 따라 1년 이상 징역, 금고형의 형을 선고 받은 자(집행 유예 포함)**는 징집 소집을 면제하고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 받은 자는 방위 소집 대상으로 편입시키게 되었다.

#### 4. **91년의 강제 징집 대책위 활동**

1) **배경:** 92, 93년의 권력 재편기를 앞두고 노태우 정권은 민족 민주 운동에 대한 총체적 탄압을 획책 하였다. 특히 학생운동에 대해서는 구속 수배 조치와 함께 병역법 개정을 통해 민주화 투쟁이 선봉에 섰던 시국 관련 구속자들을 출소와 함께 병역 의무를 면제하여 입영 조치 시킴으로써, 활동가들의 격리와 정치 보복적 탄압을 통해 정권의 안정적 재편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89년 3월 25일 2년 이하의 실형을 선고 받은 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입영토록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또한 87년 이후 각계각층의 운동이 성장함에 따라 강제 징집의 문제는 청년 학생 뿐 아니라 청년 노동자, 사관 후보생 등에 까지 탄압의 도구로 이용되기 시작 했으며 이미 각 부분별로 투쟁이 산발적이거나 지속되어온 상태에서 공동 투쟁의 요구가 제기되었다.

노동자들의 경우 부산 경남 지역의 방위 산업체 특례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병역 특례를 악용한 노동 운동 탄압에 대해 이미 88년 이전 부터 투쟁이 계속 되었고 그 주체들도 형성 되었다. 청년 학생의 경우에는 89년초 민정당 중앙당사 점거 농성 투쟁을 벌였던 동지들이 1년 6월의 형을 선고 받고 90년 9월 만기 출소하였고, 11월 민정당사 정치 연수원 점거 투쟁 동지들이 출소하면서, 그동안 개인적인 고민과 해결로 진행되었던 강제 징집 문제를 조직적 투쟁으로써 현정권의 정치적 탄압 책동을 폭로, 분쇄하여야 한다는 공동의 결의를 확보하게 된다.

#### 2) **경과**

① 91.1.23일자 한겨레 신문광고와 동시에 강집 대상자 신고 센터를 「윤 석양 후원 사업회」(이하 후사) 사무실에 개설하고 「말」지 등에 광고를 실었다.(강집 대책위 준비 모임에서 병무청에 1차 공개 질의서 전달, 2일에 답변을 받음)

② 각종 언론 매체가 김희등에 참석하면서 홍보와 함께 대상자 파악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③ 기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91년 4월 27일 임시 국회 회기 시점에 맞추어 신민 당사에서 농성에 들어감.(참가 인원 및 인적 구성은 파악 못함) 이후, 농성이 3일간 진행됨.(강 경대 열사 살인 사건) 이 과정에서 병무청을 방문하여 병무청의 답변을 검토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2차 질의서를 전달하였다.

④ 7월 정기 국회를 겨냥하여 국회 청원을 위해서 홍보와 서명작업을 각 집회 공간

고 그 기간중 병무청 항의방문과 대 국민 선전전을 수행하였으며 국회 청원은 신  
민당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못하여 실행하지 못했다. 농성에 들어간 지 4일후 농성  
해제를 결의하고 새로운 모색을 결의 하였다.



# 감옥에서 군대로?

인권 자료실		
등록일	분류기호	자료번호
	B19	26

## 감옥에서 군대로?

조국의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해 노력했던 시국사범들의 부당한 군 징집은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입시다. 해당자 신고를 받습니다.

접수처(전화)766-8828 (팩스)766-4979

양심수들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

**<양심수의 군문제해결을 위한 모임>에서 드립니다.**

**전화: 766-8828, 764-9304 팩스: 766-4979**

## # 어머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 청년 학생의 마음의 고향, 민가협이 제8회 정기 총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당신의 아들딸, 남편과 함께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싸워 온 민가협의 험난한 역정이 승리의 꽃을 피울 날이 그리 멀지 않았음을 확신합니다. 소위 문민정부의 출범도, 예고되는 양심수들의 대거 석방도 비록 완전하지는 않다하더라도 민가협 어머님들의 눈물어린 투쟁에 의해 얻어진 결실임을 모르는 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분위기에 걸맞지 않게 마음 한 구석에 어두운 걱정을 묻어두고 나오는 양심수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바로 출소와 동시에 군입대를 해야 하는 청년, 학생, 특례노동자들입니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은 2년 미만의 형 선고자들, 특히 시국관련 구속자들의 군입대를 요구하고 있으며(일반 수형자의 경우 군내 사고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입영순위를 후위로 조정하고 있음) 그것도 출소와 동시에 영장을 발부하여 가족과 애인을 만나는 즐거움도 누릴 새도 없이 또 한번 사회로부터의 격리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시국사건관련 학생

강제징집면제 건의

「양심수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이 11일 시국사건과 관련, 북영증이거나 출소한 학생들의 군강제징집을 면해줄것을 요청하는 각계원로 13명의 건의서와 당사자 2백32명의 탄원서를 받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출했다.



## # 저희들은 투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징역을 살고 나와서 곧바로 군대로 끌려 가야한다는 처지를 불쌍하다고 다고만 보기에 저희들이 당하는 고통과 문제의 심각성은 너무나 큽니다. 출소와 더불어 군대로 곧장 끌려간다면 짧게는 4년 길게는 6년간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정상적인 학업은 커녕, 변변히 취직을 나이도 넘겨 저희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박탈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청주대 86학번인 백상진 씨는 89년 집시법 위반으로 1년 6월을 선고 받고 만기출소 했으나 91년 자주대오 사건으로 또다시 1년 6월을 선고받아 도합 3년 3개월 (상고 기간 석달 포함)을 복역하고 지난 2월 28일 출소했으나 군입영 영장이 발부된 상태임. 백상진 학우의 경우 2년 이상을 복역하고도 단일사건으로 2년선고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집당할 처지에 처해 있습니다. 이학우가 학업을 마치고 군입대 까지 마치면 30대 중반의 나이가 됩니다.

또한 6공하에서는 5공때처럼 입대한 운동권학생들에 대한 잔인한 탄압은 드물지만 윤석양이병, 최홍기이병의 양심선언에서 보듯이 아직도 광범하게 자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입대한 학생들을 고문, 취조하여 각조의 학생운동조직사건을 조작해 내고 암면있는 친구를 팔아 계몽의 안전을 꾀하게 하는 등, 신종 민주세력탄압의 방법으로 양심적 학생들에 대한 군징집이 악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동구대 활동가 조직사건, 서웅대 활동가 사건, 한남대 활동가 사건, 청주대 자주대오사건, 상지대 활동가사건, 안동대 애국학생회 사건, 민민학련사건 등이 바로 그 예입니다.

현재 병역자원이 넘쳐나고 있어 정부는 골치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일반사범과는 달리, 시국사범들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군징집을 하는 것은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였던 학생들에 대한 탄압으로 밖에는 달리 볼 수 없습니다.



## # 저희들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상황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저희들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군대는 의례 가야한다는 통념에 사로잡혀 같은 민주세력내에서도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확산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거 저희 선배들도 이러한 부당징집에 맞서 당당하게 싸워서 승리하였던 경험을 저희는 들어 알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88년, 멀게는 78~79년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문민정부가 시자되는 지금, 저희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널리 알리고 현재의 불합리한 병역법 시행령을 합리적이었던 88년의 시행령으로 환원하고자 합니다. (88년 시행령에 의하면 실형1년 이상의 선고를 받은 자는 징집을 해제하였고 죄질에 따른 시국사범들에 대한 선별적인 부당징집은 없었음) 지금도 혼자서 이 문제로 괴로워하는 학생들이 많고 국민적 이해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민가협 어머님들이 먼저 저희들 문제에 거간심을 가져주시고 도와 주십시오. 그리고 특히 지방 민가협 어머님들은 주위의 해당학생들과 민주인사들에게 저희들의 활동을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저희선배들은 이러한 모든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의연히 투쟁하셨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감수할 것이 아니라 힘을 합쳐 고쳐나가야 합니다. 그 투쟁에 저희들이 선두에 서겠습니다.!!!

### ### 우리의 요구 ###

**양심수를 전면 석방하라!!**

**양심수에 대한 부당징집 철폐하라!**

**불합리한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하라!**



인권 자료실		
등록일	분류기호	자료번호
1993년 11월	15일(월요일)	1
	B19	19

# 양심수 군문제해결을 위한 모임 소식

발행처: 양심수 군문제해결을 위한 모임 / 서울시 종로구 호재동 107-2 호재빌딩4층 ☎766-8828 FAX)766-4979

## 국회 합의 있으면 전향적 조치 가능

### 국무총리, 신계륜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밝혀

지난 11월 3일 정기국회 사회분야 대정부 질의 중 민주당의 신계륜 의원이 질의한 530여 시국관련 구속 학생들의 징집문제에 대해 국무총리는 서면 답변서에서 "현재 이와 관련한 청원이 국회에 계류 중이므로 판단을 내려주시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전문 아래)

이는 지난 10월 8일에 있

었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병무청장을 통해 발표된 국방부측의 입장인 "청년학생 수형자들의 병역문제의 구제조치는 사실상 불가하다"는 안이 최종적인 입장이 아니라는 점에서 커다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총리의 답변 내용은 일단은 일반수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든 국방부측의 입장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이지만

이번 정기국회 국방상임위원회 청원심사소위(위원장: 서수종, 위원: 광영달, 윤대균-이상 민자, 임복진, 강창성 의원-이상 민주)에서 이 문제해결에 대한 여야간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기도 합니다.

다가오는 11월 말경으로 예상되는 국방상임위와 청원심사소위에서 국회가 개혁의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 국무총리 답변 (전문)

1. 현행 병역법에 2년 이상의 실형 수형자에 한하여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방위소집을 면제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국사범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신계륜 의원께서 질의하신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구속되었던 학생들의 병역문제를 구제하는 문제는 이들 학생들 뿐만 아니라 연간 8천여명에 이르는 일반 형사범과 기복무중인 1만6천여명의 수형경력자와의 형평 등에 문제가 있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1. 다만, 현재 이와 관련한 청원이 국회에 계류중이므로 결정을 내려주시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광고기금마련 위한 하루주점 열어

<양군모>는 이달 27일 한양대에서 광고기금 조성을 위한 하루주점을 엽니다. 이곳에서는 94년 일지와 달력, 연하장 등도 판매할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과 호응을 부탁드립니다. ▣



주 장

# 부당징집의 정치적 이용, 이제는 없어져야

군사정권의 위기 때마다 사회적 격리 수단으로 사용

정권위기마다 바뀌는 병역법 시행령  
병역법 시행령은 역대의 군사정권에 의해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습니다.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병역법 시행령은 정권의 위기 때마다 민주화운동에 참여하는 젊은이들을

군대로 보내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데 사용되어 왔던 것입니다.

공안통치때 개악  
지난 88년 국민들의 민주화 의지로 만들어진 여소야대 국회에서는 5공 후반에 만들어진 병역법 시행령의 졸속성과 모순을 지적하면

서 시국관련 청년학생 수형자들의 정상적인 사회참여를 보장하는 취지에서 전향적으로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89년 정권의 위기에 봉착한 6공 군사정부는 공안합수부를 설치하고 다시금 시행령을 개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유신 1기 (75.7.이전)	6개월 이상 징역선고자는 죄질 불문하고 소집면제
유신 2기 (75.7.이후)	6개월 이상 징역선고자 중 대학생은 여타 결격사유가 없는한 현역입영
5공 1기 (84.5.이전)	유신 1기와 같음
5공 2기 (84.5.이후)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은 집시법을 제외한 10개 특별법(보안법 포함)위반자는 면제-집시법 위반자는 3년 이상만 면제
6공 1기 (88.8-89.3)	죄질에 상관없이 1년 이상 형 선고자로 2년 이상 집행유예자 면제
6공 2기 (89.3.-현재)	2년 이상 징역 선고자만 면제 - 집행유예자는 제외

부당징집 문제 해결-문민정부의 과제

문민정부는 그 이름에 걸맞게 군사통치의 잔재를 청산해야만 하는 역사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 군사통치 시기에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일관성없이 개정되어온 병역법 시행령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에 하루 바빠 나서야 할 것입니다.

## 국방부장관 면담요청

지난 9일 서울, 청주, 대구 등 7개 지역 <양군모>회원들은 병무청을 방문하여 현재 발부되고 있는 영장 일괄 연기와 부당징집 철폐를 요구하였습니다.

서울에서는 이날 국방부를 방문하여 국방부가 나름대로 군개혁에 앞장섰던 것과 같은 자세로 양심수 부당징집 문제 해결에 임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국방부장관과의 18일경 면담을 정중히 요청하였습니다.□

## 알림글

이른바 병역법으로 기소중지된 사람과 병역관계로 형방불명된 사람들을 긴급히 찾습니다.

해당자와 해당자를 아시는 분은 상황실로 보고해주시시오.

☎766-8828(양군모 사무실)  
☎ 농성장소: 마포민주당사



# <양군모>, 민주당사에서 농성 시작

## 국회의 진지한 해결의지 기대하며 15일부터

전국의 530여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 회원들은 이번달 15일부터 마포 민주당사에서 시국관련 청년학생 수형자들의 부당징집 철폐를 요구하는 철야농성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들의 이번 민주당사 농

성은 현 정부의 과거청산 내용 중 올해안에 부당징집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는 강한 의사의 표명입니다. 농성에 들어가기 앞서 이날 오후 2시부터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앞에서 시작하여

민주자유당사 앞까지 행진을 하며 시국관련 수형 청년학생의 부당징집 문제 해결에 민자당이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이번 민주당 철야농성을 통하여 꽃같은 20대의 어려웠던 삶을 시대의 아픔으로 접어두고 뒤늦게나마 정상적인 삶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여야국회의원을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 대구 하나신문, 부당징집에 관한 기사 실려

대구지역의 일간지인 <하나신문>의 지난 9일자에 '문민시대에 군사통치 잔재는 없어야'라는 제하로 시국관련 청년학생 수형자들의 부당징집에 관한 소식이 실렸습니다. 이날 기사에서는 "역대 군사정권이 시국관련 청년 학생들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고자 강제징집하거나 또는 출소 직후에 부당하게 징집하는 편법을 써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고 전제하면서 현재의 병역법 시행령이 과거 군사통치 시기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방편으로 왜곡되어 왔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군입대 적령기를 지나 나이 들어 군복무를 해야 하는 시국관련 청년학생들의 사회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 대구지역 <양심수군문 제대책위>기자회견 — 수배자 전원해결과 부당징집 철폐 요구

지난 8일 대구지역 <양심수 군문제 대책위>등 8개단체는 경북대학교 학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혁시대에 발맞춰 국가보안법 철폐와 정치수배자의 전원해결과 5, 6공 시기 시국관련 청년학생 수형자의 부당징집 문제 해결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날의 기자회견 내용은 대구매일신문 11월 9일자에 보도되었습니다. ▣

### ■ 만 화





# 1만인 탄원운동, 가속적으로 진행중

## 서울지역 교수님 250여분 참여

청년학생 수형자들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1만인 탄원운동이 뜻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 속에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달 말경으로 예상되는 정기국회 국방상임위의 청원심사 소위에 제출하기 위한 이번 탄원은 저희 <양군

모>회원들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제자들을 걱정해 주시는 마음에서 서명해 주시는 교수님들의 서명은 저희들의 문제를 하루 빨리 해결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번 소식지에는 명단 정

리와 지면 관계로 많은 분들의 성함을 다 신지 못함을 사과드리며 명단이 정리되는대로 탄원 서명하신 모든 분의 성함을 실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래의 서명상황은 11월 13일까지의 집계입니다.

### ■ 학교소식

## 건국대<양군모> 일일주점 열어

건국대 <양군모>에서는 지난 11일 건국대학교 교내 학생회관 앞에서 양심수 부당징집 철폐를 위한 신문광고 기금 마련을 위한 1일주점을 개설하였습니다.■

원 로
이돈명,한승현,박형규,신창균
교 수
한준상(연세대),김진균(서울대),박명광(경희대)외 280분
종교계
김거성,김성훈,오용직,정진우(기독교)
국회의원
민자당, 민주당, 무소속 의원 85분

의료계
임익근,김미현(이상 약사) 김현경,박소연(이상 치과의사) 윤여운(의사)
문화예술계
김효진,장이환,홍진기
노동계
이성도(전노협)외 50여분
사회단체
권영길(연노련 의장)외

청년학생 양심수의 군문제 해결을 위한 신문광고 기금마련

# 이 / 루 / 주 / 점

- ◆ **언 제** : 93년 11월 27일 (토) 늦은 2시30분-11시30분
- ◆ **어디서** : 한양대 학생회관 내 조교식당
- ◆ **주 최** : 청년학생 양심수 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
- ◆ **후 원** : 민가협,KNCC인권위,불교인권위,전국연합인권위,동학민족통일회

\*즉석 장기자랑.대상자 어머니 노래습씨,문화공연,  
\*물품판매 (94년 일지, 연하장, 신영복 선생 친필 달력 등 할인판매)



20

	사료번호	
	B19	18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

**황인성 국무총리의 약속대로  
청년학생 양심수의 부당징집은  
철폐되어야 합니다.**



**청년학생 양심수 부당징집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

공동대표: 김승훈 신부, 김재열 KNCC 인권위원장

(☎ 784 - 4665, FAX 784 - 4666)



# 군사정권의 민주화운동 탄압수단 부/당/징/집!

참혹했던 5·6공 군사통치 시절,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수배생활과 감옥살이로 젊음을 군사  
정권에 빼앗겼던 청년학생들.  
노태우정권은 89년 공안통치 하에서 이들을 사회로부터 격  
리시키겠다는 의도로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감옥에서  
군대로 이어지는 부당징집을 자행했습니다.  
수배-구속-수형생활로 이미 입영적령기가 평균 4-5년 이  
상 넘어 학업과 사회진출의 기회조차 놓쳐버린 530여 청년  
학생 양심수들이 '과거청산'차원에서 '정상적인 사회복귀'로  
나아갈 수 있게 「부당징집 철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김영삼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문민정부가 들어서기  
까지 수많은 젊은이들의 피와 땀이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 군사정권과의 차별성을 누누이 강조한 현정부는 당연  
히 선차적 과업으로 군사통치의 잔재청산과 그 희생자들에  
대한 인권회복을 마땅히 이루어내야 합니다.



530여 청년양심수는  
문민정부에 요구합니다.

군사통치 잔재청산과  
희생자들에 대한 인권  
회복은 '양심수 부당징  
집 철폐'로부터 출발해  
야합니다.



# 이제 부당징집 철폐는 국민의 뜻으로 밝혀졌습니다.

##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합의로 해결 요구

“그동안 수배, 구속, 수형 등으로  
상당한 기간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던 점을 감안,  
과거의 정치적 희생에 대한 치유와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국방부에 대하여 청원의 취지를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하여  
상응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함”

- 1993년 12월 9일 국회국방상임위 의결안 중

## 국공립대학교 총장단 협의회 정부에 건의

청년학생 양심수의 부당징집 철폐를 위해 대학총장님께서도 나서셨습니다.  
12월 3일 경북대학교에서 열린 국공립대학교 총장단 협의회에서는 시국관  
련 수형 제자들의 징,소집면제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 양심수 부당징집 철폐를 위한 탄원에 참여하신 분들

### 교수님 1,350 여명

전국 대학 총장님들 : 11명

전국 대학 교수님들 : 1,350여명

### 국회의원 155명 - 국회의원 총재적인원 299명 中

민자당 국회의원 : 48명

민주당 국회의원 : 93명

국민당, 무소속 : 14명



## 이제는 정부와 국방부의 결단만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10월 28일 황인성 국무총리는 신계륜의원의 질의에 “국회에서 결정을 내려주시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제 국회 국방상임위원회에서 「병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시국 관련 수형자의 보충역 편입을 원하는 청원」이 여야합의로 통과되고 본회의에서의 통과 또한 확실시 되고 있는 지금,

정부와 국방부는 시국관련 청년학생양심수의 부당징집을 완전히 철폐하는 진향적이고 포괄적인 조치를 취하는 개혁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 ☞ 우리의 요구 ☞

1. 정부는 부당징집 도구 병역법시행령 103조를 즉각 개정하라.
2. 530여 청년학생 양심수에 대한 부당징집을 철폐하라.
3.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의 답변을 책임지고 부당징집 철폐방안과 일정을 조속히 밝혀라.

## 여야 합의 불이행 국방부 규탄 및 부당징집 철폐를 위한 청년학생 양심수 결의대회

장소: 삼각지 국방부 앞

시간: 1993년 12월 14일

주최: 청년학생 양심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사회대책위



인권 자료실		
등록일	유기호	자료번호
	청원서	
	B19	10

- 현행 병역법 시행령 개정 및  
 시국관련 수형자의 보충역 편입에 관한 -

## 청원서

수신: 국회  
 참고: 국회 국방위원회  
 발신: 양심수의 군문제해결을 위한 모임  
 (대표 김정훈 외 283명)  
 청원일자: 1993년 4월 21일



## 1. 청원의 요지

- ▶ 새정부출범의 밑거름이 되었던 지난 시기 정치적 희생자들에 대한 치유와 사회적 기회제공을 위한 조치가 과거청산 및 국민화합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 현재 국민들의 지지와 바램속에 전개되고 있는 새정부의 개혁의 전제이자 또다른 과제는, 시국관련 수형자(양심수)에 대한 추가 사면복권, 수배해제 및 부당징집의 폐지입니다.
- ▶ 특히, 시국관련 수형자에 대한 자의적인 병무행정은 정통성이 결여되었던 과거 군사 통치의 산물입니다.
- ▶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장기적 사회격리차원에서 기능했던 제도적 장치중의 하나가 부당징집제도이며 그 법적 근거는 병역법 시행령 및 병무청의 수형자 처리 기준입니다.
- ▶ 과거청산과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시국관련 수형자에 대한 부당징집을 폐지하기 위하여 현행 병역법 시행령(89년 3월 25일 개정) 103조를 개정하고 구체적 처리기준으로 「병무청 수형자 처리기준」을 88년 8월 1일자의 것으로 환원, 개정하여 시국관련 수형자를 보충역에 편입시켜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2. 과거 시국관련 수형자들에 대한 보충역 편입 실적

	시행년도	소급적용 시기	보충역 편입자 수
1차	80년	76. 7. 10 -- 79. 12. 31	400여 명
2차	84년 3월	80. 5. 17 -- 84. 3월	400여 명
3차	88년	84. 5. 25 -- 88. 7. 30	447명



### 3. 현행 병역법 개정 및 시국관련 수형자의 보충역 편입에 관한 근거

#### 1) 역대 시국관련 수형자에 대한 병무행정의 특징

##### ㉠ 과거 시국관련 수형자에 대한 병무행정의 특징

▶ 과거 시국관련 수형자에 대한 병무행정은 정치수에 대한 장기적 사회적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병역법 시행령 및 시행세칙의 개정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다음과 같은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병역법 시행령 초기세칙은 76년 긴급조치 발효직후, 80년 초, 84년 유화국면, 88년 여소야대 정국초기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마다 쉽게 고쳐왔습니다.

둘째: 이종의 사회적 고통인 시국관련 수형자들의 부당징집 폐지의 주장이 제기될 때마다 역대 정권은 80년, 84년, 88년 등 세차례에 걸쳐 당시의 시행령, 시행세칙을 개정, 소급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여 왔습니다.

유신1기(75년 7월 10일 이전)	6개월이상 실형선고자는 죄질을 불문하고 소집면제
유신2기(75년 7월 10일 이후)	6개월이상 실형선고자 중 대학생은 여타 결격사유가 없는 한 현역입영
5공1기(84년 5월 25일 이전)	유신1기와 같음
5공2기(84년 5월 25일 이후)	3년미만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은 <u>집시법을 제외한</u> 10개 특별법(국가보안법 포함)위반자는 면제 - 집시법 위반자는 3년이상만 면제
6공1기(88. 8.1 - 89. 3.25)	죄질에 상관없이 1년이상 형 선고자로 2년이상 집행유예자 면제
6공2기(89. 3.25이후 현재)	2년이상의 실형선고자만 면제 - 집행유예자 제외

☞ <별첨자료 3> 「병역법 시행령 개정사」 참고

☞ <별첨자료 4> 「역대 수형자의 병역복무에 관한 기준」 참고



㊤ 현행 병역법 시행령(89년 3월 25일 개정) 및 병무행정의 문제점

▶ 현행 병역법 시행령 개정상의 문제점

첫째: 개정 시기상의 의혹

- 88년 6월 30일 병역법 시행령 개정 이후 불과 7개월만인 89년 3월 25일 시행령을 개정한 이유가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같은시기인 3월 25일 공안합수부 설치, 문익환 목사 방북)

☞ <별첨자료 5> 「관보」에 실린 현행 시행령 개정 이유 참고

둘째: 정치적 고려에 의한 졸속개정의 징표

- 89년 3월 25일 이전 ~ 실형 2년 이상자는 군입대전이나 군입대후에도 보충역에 편입
  - ~ 실형 2년 미만자는 군입대전에는 병무청장의 심사에 의해서, 군입대후에는 각군 참모총장의 심사에 의해서 보충역에 편입
- 89년 3월 25일 이후 ~ 실형 2년 미만자는 군입대전에는 병무청장의 심사규정 삭제로 현역입영하고 군입대후에는 각군 참모총장의 심사에 의해서 보충역에 편입

☞ <별첨자료6 > 「시행령 103, 104조」 참고

셋째: 결국 현행 시행령은 당시 시국관련 구형자에 대한 장기적 사회격리라는 목적하에서 일관성없이 졸속으로 개정된 것입니다.

▶ 현행 병역법 시행령 시행상의 문제점

첫째: 일반 수형자와 시국관련 수형자와의 차별처리

- 병무청의 수형자 처리지침에 의하면 17종의 죄를 위반하여 2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에 대해서는 입영 후순위 처분을 통해서 결국에는 장기대기 면제제도로 인해 보충역에 편입됩니다. 그러나, 시국관련 수형자는 출소직후 영장이 발부되는 등 차별처리 되어왔습니다.

☞ <별첨자료 7 > 「병무청 수형자 처리기준」(89.3.25) 참고

둘째: 현행 시행령에 의하면 2년 미만 선고자는 현역으로 입영해야 하는 바 각기 다른 사건으로 1년6월의 형을 두번 받아 도합 3년의 수형생활을 마쳐도 보충역에 편입되지 않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셋째: 군대내에서의 녹화사업

- 89년 3월 25일 개정 이후에도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청년학생들에 대한 장기적 사회격리 차원에서 구조화된 제도적 장치가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수배-구속-징집-녹화사업-의문사」 등 일련의 프로그램은 시국관련 수형자들로 하여금 억울한 기피생활을 강요하였습니다. 이로인해 89년 이후 2년에서 4년간의 비정상적인 생활이 정권에 의해 강요되어 왔습니다.

㊤ 지난시기 시국관련 수형자에 대한 병무행정은 병역의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차원에서 일관성있게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정권유지를 위한 제도적 탄압의 일환으로 악용되어 왔습니다.



2) 병역의무와 시국관련 수형자의 보충역 편입문제 - 합리적 기준의 설정근거

- ▶ 과거의 정치적 희생을 치유하는 문제와 국방의 의무를 공평히 부담하는 문제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 ▶ 「국민역」 복무에는 제1 국민역과 제2 국민역이 있으며, 제1 국민역에는 현역과 보충역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은 병역의무의 부담수준에는 대상자의 사회적 처지에 따라 상대적으로 평등한 부담이라고 볼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설정되는지의 문제입니다.
  - ☞ <별첨자료 8> 「국민역 복무의 종류」 참고
- ▶ 「합리적 기준」설정의 관건은 지난 시기 시국관련 수형자들의 사회적 활동이 일반 범법자들의 그것과 달리 새정부출범의 토양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라고 봅니다. 그런데, 김영삼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이미 언급한 바처럼 “새정부는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불타는 열망과 거룩한 희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지난시기의 시국관련 활동으로 수형생활을 하게 된 것은 민주화를 위한 정치적 희생이자 사회적 고통이었습니다. 89년 3월 25일 이후 저희들이 수배, 구속, 자격정지 등 2년에서 4년간 감내해야만 했던 고통이 결국은 우리사회 전체가 나누어 져야만 했던 고통이었다는 평가가 전제될 때, 병역의무의 상대적인 평등 부담의 기준으로서 ‘과거의 정치적 희생에 대한 치유 및 국민화합 조치’가 제시될 수 있습니다.
- ▶ 과거에 정통성이 취약했던 군사정권에서조차 80년, 84년, 88년 등 세차례에 걸쳐 시국관련 수형자에 대한 보충역 편입조치를 취했던 것도 바로 이런 시각하에서 가능했다고 봅니다.

4. 보충역 편입 대상자와 병역법 시행령 등 개정방안

1) 보충역 편입 대상자

- ▶ 1989년 3월 25일부터 1993년 2월 24일 사이에 시국관련 사건으로 2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자. 약 300여 명
- ☞ <별첨자료 1> 「대상자 명단」 참고

2) 병역법 시행령 등 개정방안

**[현행 병역법 시행령]**

- ▶ 제103조 제1항 : 징병검사, 현역병 입영 또는 방위소집 대상자로서 법 제5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방위소집을 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1호와 같다.
  - 1호: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 선고를 받은 자. 다만 그 형의 집행이 유예된 자는 제외한다.(1989년 3월 25일 단서 신설)
  - 제2항 : (1989년 3월 25일 삭제)